

한국유산균·프로바이오틱스학회 회칙

현	개정(안)
<p>2018년 6월 8일 개정</p> <p>제 3장 회원</p> <p>제 4 조(회원)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정한다.</p> <p>(1) 정회원 : 학회 사업 목적에 관심을 갖는 자로서,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여 입회한 개인으로 연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.</p> <p>(2) 학생회원 : 전문대, 대학, 또는 연구소에 소속하는 학생으로 본 회의 목적에 동의하여 입회한 개인으로 학생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.</p> <p>(3) 단체회원 : 본회의 사업을 협조하기 위하여 입회한 법인 또는 단체로, 단체회비를 납부한 단체로 한다.</p> <p>(4) 종신회원 : 정회원 중 종신회비를 납부하고 이사회 동의를 받은 자로 한다.</p> <p>제 5 조 회원은 본회가 실시하는 각 사업의 참가 및 본회의 총회에 참가하여 의결을 행사할 수 있다.</p> <p>제 6 조(입회) 본회에 정회원, 학생회원, 단체회원, 종신회원으로 입회하고자 하는 자는 별도로 정한 입회 신청서를 학회에 제출하고 입회년도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</p> <p>제 7 조 정회원, 종신회원, 학생회원, 단체회원의 연회비는 부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.</p> <p>제 8 조 회원은 회원의 주소, 성명, 소속 등에 변경이 발생할 경우, 즉시 본회에 변경원을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제 9 조(탈퇴) 회원은 이하의 이유의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본회를 탈퇴한다.</p> <p>(1) 소정의 탈퇴원을 학회에 제출 한 경우</p> <p>(2) 학생회원의 경우,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. 단 정회원으로 등록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즉시 자격 변경원을 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(3) 본회의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거나, 명예를 훼손 한 행위가 명백하여 총회에 의하여 제명이 결정된 경우</p> <p>제 4장 총회</p>	<p>2019년 6월 14일 개정</p> <p>제 3장 회원</p> <p>제 4 조(회원)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정한다.</p> <p>(1) 평회원 : 학회 사업 목적에 관심을 갖는 자로서,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여 입회한 개인으로 연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.</p> <p>(2) 정회원 : 학회 사업 목적에 관심을 갖는 자로서,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여 입회한 개인으로 연회비를 납부한 자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</p> <p>(3) 학생회원 : 전문대, 대학, 또는 연구소에 소속하는 학생으로 본 회의 목적에 동의하여 입회한 개인으로 학생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.</p> <p>(4) 단체회원 : 본회의 사업을 협조하기 위하여 입회한 법인 또는 단체로, 단체회비를 납부한 단체로 한다.</p> <p>(5) 종신회원 : 정회원 중 종신회비를 납부하고 이사회 동의를 받은 자로 한다.</p> <p>(6) 도서관회원은 공중의 정보이용을 위하여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도서관으로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, 회장의 승인을 받은 단체로 한다.</p> <p>제 5 조 정회원과 종신회원은 본회가 실시하는 각 사업의 참가 및 본회의 총회에 참가하여 의결을 행사할 수 있다.</p> <p>제 6 조(입회) 본회에 평회원, 정회원, 학생회원, 단체회원, 종신회원, 도서관회원으로 입회하고자 하는 자는 별도로 정한 입회 신청서를 학회에 제출하고 입회년도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</p> <p>제 7 조 평회원, 정회원, 종신회원, 학생회원, 단체회원, 도서관회원의 연회비는 부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.</p> <p>제 4장 총회</p> <p>제 10 조(총회)</p> <p>(1) 총회는 본회의 최고결기기관이다.</p> <p>(2)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 한다.</p> <p>(3) 총회의 의장은 당해년도 회장으로 한다.</p> <p>(4) 정기총회는 매 사업년도의 당해년도 대회 개최시에</p>

제 10 조(총회)

- (1)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다.
- (2)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 한다.
- (3) 총회의 의장은 당해년도 회장으로 한다.
- (4) 정기총회는 매 사업년도의 당해년도 대회 개최시에 실시한다.
- (5) 임시총회는 임원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개최한다.

제 5장 임원

제 15 조(임원의 구분)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둘 수 있다.

- (1) 회장 (1 인)
- (2) 부회장 (약간명)
- (3) 이사 (약간명)
- (4) 감사 (2 명)
- (5) 명예이사 (약간명)

제 17 조(임원의 선출 및 임기)

- (1) 회장 및 부회장: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으며, 회장 및 부회장 임기는 1 년으로 하고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.
- (2) 총무이사: 회장이 임명하며, 임기는 1 년으로 한다.
- (3) 학술위원장, 편집위원장: 회장이 임명하며, 임기는 1 년으로 한다.
- (4) 이사: 회장이 임명하며, 임기는 1 년으로 한다.
- (5) 감사: 이사회에서 선출하며, 총회의 인준을 받고, 임기는 1 년으로 한다.
- (6) 명예이사: 본회는 고문과 이사 중에서 현직에서 은퇴한 경우 명예이사로 추대 한다.
- (7) 보결 또는 증원에 의한 임원의 임기는, 전임자 또는 현임자의 잔여 임기간으로 한다.

실시한다.

- (5) 임시총회는 임원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개최한다.
- (6) 총회는 정회원과 종신회원으로 구성한다.

제 5장 임원

제 15 조(임원의 구분)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둘 수 있다.

- (1) 회장 (1 인)
- (2) 수석부회장 (1 인), 부회장 (2 인이상)
- (3) 이사 (약간명)
- (4) 감사 (2 명)
- (5) 명예이사 (약간명)

제 17 조(임원의 선출 및 임기)

- (1) 회장, 수석부회장 및 부회장: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으며, 회장, 수석부회장 및 부회장 임기는 1 년으로 하고 총회의 결정에 따라 중임할 수 있다.
- (2) 상임이사: 회장이 임명하며, 임기는 1 년으로 한다.
- (2) 총무이사: 회장이 임명하며, 임기는 1 년으로 한다.
- (4) 이사: 회장이 임명하며, 임기는 1 년으로 한다.
- (5) 감사: 이사회에서 선출하며, 총회의 인준을 받고, 임기는 1 년으로 하고, 총회의 결정에 따라 중임할 수 있다.
- (6) 명예이사: 본회는 고문과 이사 중에서 현직에서 은퇴한 경우 명예이사로 추대 한다.
- (7) 보결 또는 증원에 의한 임원의 임기는, 전임자 또는 현임자의 잔여 임기간으로 한다.
- (8) 명예이사외의 임원의 임기는 만 65 세로 한다.

부 칙

- 1. 본 회칙은 2004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- 2. (회칙개정) 본회는 2004년에 제정된 회칙을 2018년 6월 8 일 개정, 2019년 6월14일 재개정하였으며 회칙은 개정일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하며, 이후는 사단법인 승인 내용에 준하여 실시한다.
- 3. 이사구성 및 이사회의 업무는 신청 및 승인된 사단법인 정관(안)을 따른다, 단, 이사구성 및 이사회의 업무는 회칙 확정 전까지는 필요한 사항은 간사회의에서 수행한다.